

인천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0나736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0나7366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가단22924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양선화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변론 종결 2021. 11. 2.

판결 선고 2021. 12. 14.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가단22924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34770호로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 법원에서 원상회복청구를 철회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제1심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장, J기관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2. 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D의 적극재산으로는 2부동산이 유일하였는데, 201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은 21,306,000원(= 개별공시지가 67,000원 × 318m²)인 사실, 그 무렵 D의 소극재산으로는 K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15,000,000원, L카드에 대한 카드대금채무

6,416,000원, M카드에 대한 카드대금채무 15,247,000원, N카드에 대한 카드대금채무 2,000,00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 당시 E에 대한 매출액 송금채무가 25,666,610원 이상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위 소극재산의 합계는 64,329,610원이다), 채무자 D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채무자 D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는, 설령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신규로 차용하기 위함이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2부동산의 담보가치 일부를 은닉 또는 소비하기 쉽게 현금화하여 그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실질적으로 심화시킨 점, D의 차용 목적이 채권자 일반을 위하여 변제자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고자 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참조), 채무자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6. 2. 4. D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3부(매월 4일 지급), 변제기 2016. 4. 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는 동네 지인의 요청으로 근저당권 담보를

조건으로 D에게 돈을 대여하게 된 것으로, 피고와 D이 친인척관계라거나 친분이 있는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당시 2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9,500,000원의 K조합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지상권 외에는 다른 가압류기입등기나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 무렵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1,306,000원 정도이나, 피고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U)에서 2부동산이 61,000,000원에 매각되어 위 K조합의 선순위 근저당채권액(15,481,436원)과 피고의 근저당채권액(13,000,000원)은 물론 원고를 포함한 5순위 배당권자들에 대해서까지 일부 배당이 이루어질 정도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밝혀진 점, ④ 피고는 주거래 금융기관의 자기 명의 계좌에서 돈을 조달하여 D에게 대여하였고, 대여 이후 2016. 3.경부터 2016. 5.경까지 D 또는 D의 남편 V으로부터 매월 차용금증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자 300,000원을 지급받았음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⑤ 피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대여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법리(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부동산을 담보로 D에게 돈을 대여하는 행위가 D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반복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각엽

판사현선헤

판사백규재

별지